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7
----------	-----

2025. 10. 15.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2025. 9. 30. 황영각 의원 등 6인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15.)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황영각 의원)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공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주간(晝間)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야간 시간까지 확대하고자, 공유주차 요금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에 관한 주차요금 별표 1의2 중 스마트공유주차의 일일 최대 요금 상한선 개정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 주요내용으로는

- 별표 1의2 중 제8호나목 스마트 공유주차<sup>1)</sup> 이용요금 1구획의 주차요금 일일 최대 상한선(7,200원)을 폐지함으로써 공유주차구획의 독점사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주차장법」 제9조<sup>2)</sup>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구청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더강남’, ‘파킹프렌즈’ 어플을 이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배정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운전자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에 등록하면, 다른 이용자가 시간별로 비어있는 공간을 사전 결제 후 주차할 수 있는 것

2)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유주차구획의 일일 최대요금 상한을 폐지하여 특정 이용자가 장시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제10790호(도로교통법), 2016.1.19] [[시행일 2016.7.2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